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0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김상훈·최춘식·최연숙

김석기 • 박대수 • 강대식

조수진 · 이종배 · 이달곤

송언석·홍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요 소득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비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한 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된임금증가 분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4).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각각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 -----<u>202</u>2년-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 금증가분의 100분의 5(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 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

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④ (생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수 있다.
- 1. ~ 3. (생략)
- ⑥ ~ ⑧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5
<u>2022년</u>